

이화여자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미래대응 LIFE 인재 양성팀” 자체 운영규정

2024년 08월 9일

이 내규는 이화여자대학교 4단계 BK21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대응 LIFE 인재 양성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사업팀장)

- ① 사업팀에 팀장을 두며, 팀장은 오구택 교수로 한다.
- ② 팀장이 휴직,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팀 참여교수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팀장 변경을 결정한다.
- ③ 다음 사업의 주요사항은 사업팀 전체 참여교수 회의에서 논의하며 교수회의의 의장은 팀장이 맡는다.
 - 가. 사업팀장 변경
 - 나. 사업팀 참여교수 변경 또는 추가
 - 다. 사업팀 규정 개정
 - 라. 신진연구 인력 선발
 - 마. 자체평가 외부인사 결정
- ④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예산상의 권한은 국고지원금 및 대응자금을 포함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 ① 4단계 BK21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팀 내에 심의 및 의결 기구인 4단계 BK21 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사업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위원장)과 참여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여 위원 이 교체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의 유고시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사업팀 예산 편성
 - 나. 참여교수 기여도 평가
 - 다.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기여도 평가
 - 라. 신진연구 인력 추천 및 기여도 평가
 - 마. 해외 장단기 연수 기관 및 학생 선발
 - 바. 해외 석학 초빙 계획 및 심의
 - 사. 기타 사업팀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 3 조 (참 여 교 수)

- ① 사업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추가한다.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제 10조 ②항에 따라 참여교수 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
- 가. 휴직, 사직 등 당연 변경 사유 발생
 - 나.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서 제시한 참여교수 자격요건 충족
 - 다. 참여 제한 조치 사유 발생 시
 - 라. 기타 사업팀의 운영을 위해 참여교수의 교체/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 ② 참여교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사업팀 교수회의에서 참여교수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정하며 당사자인 참여교수는 심의 절차에서 배제된다.
- ③ 참여교수는 사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모든 사업 관련 내용은 팀장을 의장으로 하는 사업팀 교수회의에 보고한다.
- ④ 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를 평가하여 성과급(교수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평가기준: SCI/SCI(E) 논문게재,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발표,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개최(BK 주관 사사), 국제학술교류 (외국 기관과의 MOU 또는 정기적인 학술교류행사)
 - 나. 평가방법: 운영위원회에서 교수의 사업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다. 평가시기: 연차별
 - 라. 시행시기: 1차년도부터 시행
 - 마. 지급금액: 성과급 예산액을 기여도에 따라 비례지급
 - 바. 재원 : 4단계 BK 21 사업비

제 5 조 (신진연구인력)

- ① 사업팀은 원활한 사업운동을 위해 신진연구인력으로 계약(연구)교수와 박사후과정 연구원을 둔다.
- ②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및 재임용은 다음의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추천과 사업팀 교수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가. 평가기준: SCI/SCI(E)논문게재 실적, 신진인력 우선지원
나. 평가시기: 연차별
- ③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연구원은 주당 40시간이상 연구업무, 사업진행 및 대외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한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모든 학술활동지원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팀장이 정한다.
- ⑤ 신진연구인력의 학내·외 강의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팀장의 승인하에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시간 강의를 할 수 있다.
- ⑥ 신진연구인력은 임용기간 중 연 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신진연구인력의 강의 자격에 관한 학교 규정과 사업팀에 관련된 연구업무, 사업진행 및 대외업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회에서 심사 및 평가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⑦ 팀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을 평가하여 성과급(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다
가. 평가기준: 신진연구인력 중 SCI/SCI(E) 논문 및 학술 진흥재단 등재 논문게재,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발표 (구두 및 포스터)
나. 평가방법: 운영위원회에서 신진연구인력의 사업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 평가시기: 연차별
라. 지급금액: 참여 신진연구인력이 성과급 지급 가능액을 기여도에 따라 비례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 가능액은 연차별 예산에 따라서 결정된다.
마. 재원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⑧ 신진인력이 계약을 만료하고 재임용하는 경우 BK 운영위원회는「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월지급액을 상향할 수 있다.

제 6 조 (참여대학원생)

-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등록 또는 논문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

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기간을 제외한다. 그러나 수료생의 경우, 수료 후 등록하지 않은 학기도 재학년 한에 산정한다.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나.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다.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②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를 지니며 향후 진로 현황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③ 팀장은 참여대학원생에 대하여 미리 전항의 의무사항을 공지하여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이 전항의 의무사항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④ 팀장은 취업, 휴학, 기타 비전일제, 평가점수에 미달되는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참여대학원생이 있을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는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팀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학술 논문 저술 등의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의 수월성을 위하여 연구활동 외의 과업을 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를 할 수 있다.
- ⑧ 참여대학원생은 교내 전액 연구조교 장학금을 제외하고 교내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되, 참여대학원생의 의무인 주 40시간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을 평가하여 성과급(대학원생 인센티브) 을 지급할 수 있다.

가. 평가기준: 참여 대학원생 중 SCI/SCI(E) 논문게재,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 발표 (구두 및 포스터)

나. 평가방법: 운영위원회에서 대학원생의 사업실적 및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한다.

※ 관련 실적이 없는 항목은 남은 항목의 비율에 따라 분할 합산

다. 평가시기: 연차별

라. 지급금액: 참여 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가능액을 기여도에 따라 비례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 가능액은 연차별 예산에 따라서 결정된다.

마. 재원 :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제 7 조 (지 원 대 학 원 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가. 4단계 BK 21 사업 참여 교수의 지도학생으로 추천을 받은 학생

나. 4단계 BK 21 사업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의 사업실적과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생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함.

② 팀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원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가. 지급시기: 월별지급

나. 지급방법: 대학원생 계좌로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이체

다. 지급금액: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석사생 월 100만원 이상, 박사생 월 160만원 이상, 박사수료생 월 130만원 이상 지급함.

③ 취업 또는 휴학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의 연구장학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예외로 졸업예정자의 졸업일이 포함된 달에 졸업 학생이 말일(2월28일 또는 8월 31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교육연구 팀장의 확인서를 구비하고 해당월의 장학금 전액을 수령할수 있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연구팀이 추진하는 연구 활동 및 사업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구팀에 관련된 학과의 강좌 운영에 의무적으로 지원 활동한다. 이에 관한 참여 및 지원실적을 운영위원회가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대학원생 추천에 반영한다.

제 8 조 (국 제 협 력)

① 국고 국제협력경비 범위 내에서 사업관련 해외연수, 해외석학 초빙 세미나, 워크샵 등의 개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팀장이 정한다.

② 국제협력경비 관련 장.단기해외연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연수라 함은 학술대회 참가와 장 단기 연수를 의미한다.

나. 해외 연수를 하는 대학원생은 귀국 전 연수활동 계획서와 귀국 후 연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외연수 중인 대학원생은 사업팀장의 허가 없이 계획서에 제출한 해외체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해외연수생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해외연수기간 내 참여대학원생(정규/연구/논문 등록생)
- 장기연수는 MOU 체결 기관으로의 교육, 연구를 지원하는 곳 또는 MOU 체결 기관이 아닐 경우 공식적인 초청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마. 장기해외연수(15일 초과)생에게 연구장학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장기해외연수생에게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지원하지 못한다. “지침서 제 34조 ⑦항”)

바. 예산 범위 내에서 총 사업 기간 내에 각 참여교수는 1인의 단기 해외연수생을 추천할 수 있다. 단기 연수 희망자는 단기 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의 협의 후 단기 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수의 필요성 및 목적 (50%), 학생 연구 능력(50%)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제 9 조 (국 내 외 석 학 초빙 및 자 문 에 관 한 지 침)

- ① 석학초빙/자문의료 기준 :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내외 석학을 사업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 후 초빙할 수 있다.
- ② 강연료 및 자문료 :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차등지급한다. 단, 해외석학의 강사, 자문료는 팀장의 판단 하에 기준을 적용치 않을 수 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강연료 (원/회)	국내	1급	기관장, 저명인사	1,000,000원 이내	제세 포함
		2급	수석급, 부교수 이상	600,000원 이내	
		3급	선임급, 조교수 이상	400,000원 이내	
		4급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참여인력은 제외)	250,000원 이내	
	해외	해외 석학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			
자문료 (원/시간)	국내	1급	책임급(교수급), 기관장, 저명인사	150,000원 이내	제세 포함
		2급	선임급(부교수 이하)	100,000원 이내	
	해외	해외 석학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			
기술지도비	1일 4시간 기준		200,000원 이내		

위원수당	운영위원회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팀 내부 운영규정상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등, 단 내부 위원은 지급불가)	200,000원 이내	
------	--	-------------	--

- ③ 지급방법 : 연구비 중앙관리를 통하여 초빙강사에게 직접 계좌이체(해외 송금 등 의 방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기 타 사 업 추 진 에 필 요 한 사 항)

- ① 모든 행.재정관련 문서는 팀장의 확인 및 결제 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다.